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적합성평가 적용 안내

RRA KSDB 제36-1호 (2025.12.1.)

□ 개 요

○ 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유선 충전규격 일원화를 위해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장착이 의무화*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

*「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-56호, 2025. 11. 5., 제정)(시행 2026. 11. 6.)

□ 근 거

○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8조(기술기준) 제9항 및 제10항

○「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」

○「전파법」 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
○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3조 [별표 1]

□ 내 용

○ 적합성평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

- 기술기준 시행('26.11.6.) 이후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는 적합성평가 고시 [별표 1] 제7호 다목 25) 나)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포함되며,

- 유선 방식으로 충전되거나 유선 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무선기자재(13종*)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**를 갖추어야 함

*「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」 제2조

**「모바일·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」 제3조

- '26.11.6. 이후 신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무선기자재(13종)가 적용대상이며, 이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적용대상이 아님

※ 시행 이전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는 변경 시에도 적용대상 아님

- 적용대상 무선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장착하거나,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은 커넥터를 장착한 경우에도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경우 해당 무선기자재를 적합인증(등록) 신청 가능

○ **적합성평가 신청방법**

- 무선기자재에 장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을 한 경우
  · (적합인증 무선기자재) 무선기자재 관련 서류 외에 자기적합확인(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) 선언서를 적합인증 신청 시 제출
  · (적합등록 무선기자재) 등록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나, 자기적합확인 선언서(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)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
- 무선기자재에 장착한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가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
  · (적합인증 무선기자재) 무선기자재 관련 서류와 함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관련 서류(시험성적서 포함)도 적합인증 신청 시 제출
  · (적합등록 무선기자재)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(별지 제6호 서식)에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적합등록 신청 시 제출하고, 지정시험기관은 해당 시험성적서 등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 보관

※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 시험 시 커넥터 규격(기술기준 별표 1)의 기준 유효자릿수까지 확인 가능한 측정기기를 사용할 것